

하도급법준수 4대실천사항

‘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’ 운영기준

제1조 목적

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/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 중 ‘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 “내부 심의위원회”)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’ 운영을 위하여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실무 수행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우선 적용

본 운영기준은 회사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3조 구성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- (2) 위원장은 구매부문장으로 하며, 구매부문장이 없는 경우 하도급위원회가 선임한다.
- (3)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하도급위원회가 선임하되,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제4조 운영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.
- (2)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실무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구매담당부서가 전담한다.

제5조 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회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한다.
- (2) 위 (1)의 ‘일정비율 이상’의 기준은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,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%, 1,000억원 이상 5,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%, 5,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%,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%)이상으로 한다.
- (3) 위 (1)의 사전 심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 -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
-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 -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 -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-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- (4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(5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(6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(7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- (8)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는 '별지 1)'의 회의록으로 기재하고, 필요 공유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(9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 하도급위원회 보고

위원장은 매월말 5일 전까지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를 하도급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서는 '별지 1)'의 회의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별지 1) (양식)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

일 시	2026년 00월 00일 00:00~00:00		회의록	확인	위원장 전희용 상무 (인)
장 소	진천 대회의실			작성	박연준 팀장 (인)
참석자	위원장	전희용 상무 (구매부문장)			
	위원	박연준 팀장, 최성호 팀장			
	기타 참석	이정섭 팀장			
회의 내용	1) 하도급거래 사전 심의				
	2) 협력업체 등록/취소 사전 심의				
	3) 협력업체 미선정/등록취소 이의신청 심의				
	4) 기타 심의				
	5) 보고 사항				